



통보

부록

본 2024 년 3 월 12 일자 통신문은 우크라이나 대표의 요청에 따라 회람한다.

제목: "전자 디스플레이의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" 우크라이나 지역사회국토기반시설개발부령안

부록 사유:	
[]	의견 마감일 변경 - 날짜:
[X]	통보 조치의 채택 - 날짜: 2023-12-06
[X]	통보 조치의 공표 - 날짜: 2024-02-27
[X]	통보 조치의 시행 - 날짜: 본 부령은 "텔레비전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" 2017 년 5 월 24 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 359 호 폐지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의 발효와 동시에, 공식 고시일로부터 6 개월 이후 발효된다.
[X]	최종 조치 전문 확인 출처 ¹ : https://zakon.rada.gov.ua/laws/show/z0177-24#Text 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UKR/final_measure/24_02003_00_x.pdf
[]	통보 조치의 철회 또는 취소 - 날짜: 조치가 재통보된 경우 관련 통보문 기호:
[]	변경된 통보 조치의 내용 또는 범위 및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출처 ¹ : 새로운 의견 수렴 마감일 (해당될 경우):
[]	발행된 해석 지침 및 전문 조회 ¹ :
[]	기타:

¹ 최종 조치 및/또는 관련 지침 문서의 전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, PDF 첨부파일,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.

내용: 우크라이나는 "전자 디스플레이의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" 2023년 12월 6일자 우크라이나 지역사회국토기반시설개발부령 제 1106호가 채택되었음을 통보한다.

본 부령은 2024년 2월 5일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등록되었고 2024년 2월 27일 고시되었다.

본 부령은 "텔레비전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" 2017년 5월 24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 359호 폐지에 관한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의 발효와 동시에, 공식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효된다.
